

-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2340
------------	------

2018년 4월 5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2월 6일, 서울특별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8년 2월 9일

다. 상정일자

- 제280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교통위원회(2018년 4월 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교통본부장 고흥석)

가. 제안이유

- 상위법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의 전시시설 구조 관련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
-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구조에 대한 규정을 모든 지역에 대해 일률

적으로 적용하여 토지 용도지구와 주민불편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개정함으로써 관련 시설의 설치가 불필요한 지역의 자동차매매업에 대해 과다 규제 방지

나. 주요골자

- 자동차관리사업의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중 전시시설 구조에 대한 규정이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해당하며, 조례 시행 전에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에도 소급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이 자동차매매업의 전시시설이 위치한 토지의 용도지역 및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전시시설 구조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신설규제 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협의완료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 (5)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6)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국·국 협의 사항
: 해당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17. 10. 12. ~11. 1.) 결과: 의견 없음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동수)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중 전시시설 구조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자동차정비업 종류의 세부 명칭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의 용어와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2017년 7월 18일 개정된 법 시행규칙 중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중 전시시설 구조의 경우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로 한정된 규정”과 “해당 자치구 구청장이 토지의 용도지역 및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시시설의 구조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별도의 문제가 없다 할 것임

※ 참고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17.7.18. 일부개정·시행)

[별표 21의2]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제111조의2 관련)

1.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구분	기준
나. 전시시설의 구조(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한정한다)	· 전시시설 외부에서 차량이 보이지 않도록 시설을 갖추되, 주거 및 도시미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벽을 전시용 유리창(Show Window)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 3. 나목의 등록기준은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전시시설이 위치한 토지의 용도지역 및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아울러 동 개정조례안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중 “전시시설이 12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는 출구 및 입구 규정과 관련하여 해당 도로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 2항¹⁾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²⁾으로 규정함으로써 적용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동 조례의 자동차정비업 명칭 중 ‘소형자동차정비업’과 ‘부분정비업’을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정비업 종류³⁾ 세부명칭에 맞게 각각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과 ‘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 개정하였음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②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도로의 구분) 참조

1. 사용 및 형태별 구분 :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각 도로별 정의는 생략)
2. 규모별 구분 : 광로, 대로, 중로, 소로(※각 도로별 정의는 생략)
3. 기능별 구분 :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集散道路), 국지도로, 특수도로(※각 도로별 정의는 생략)

3)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자동차정비업의 세분) ①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자동차종합정비업
2.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3. 자동차전문정비업
4. 원동기전문정비업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나목 본문 중 “소형자동차정비업”을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한다.

별표 1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전시시설의 구조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한정한다.)	· 전시시설 외부에서 차량이 보이지 않도록 시설을 갖추되, 주거 및 도시미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벽을 전시용 유리창(Show Window)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별표 1 주)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나목의 등록기준은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전시시설이 위치한 토지의 용도지역 및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 주)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마목의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된 기준을 적용 한다.

별표 2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자동차종합 정비업	소형자동차종 합 정비업	자동차전문 정비업	원동기전문 정비업
-----	--------------	--------------------	--------------	--------------

별표 2 주)제9호 중 “부분정비업자”를 “자동차전문정비업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주) 제3호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신청 한 자 및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완료 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과 같이 확보할 것</p> <p>가. (생 략)</p> <p>나. <u>소형자동차정비업</u>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 2명 이상. 단, 정비요원 총수가 11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이상</p> <p>다. (생 략)</p> <p>② (생 략)</p> <p>[별표 1]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구 분</th> <th style="width: 80%;">기 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나. 전시시설의 구조</td> <td>· 전시시설 외부에서 차량이 보이지 않도록 시설을 갖추되, 주거 및 도시미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벽을 전시용 유리창(Show Window)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마. 출구 및 입구</td> <td>· 전시시설이 12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td> </tr> </tbody> </table>	구 분	기 준	나. 전시시설의 구조	· 전시시설 외부에서 차량이 보이지 않도록 시설을 갖추되, 주거 및 도시미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벽을 전시용 유리창(Show Window)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출구 및 입구	· 전시시설이 12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p>제5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u>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u> ----- ----- ----- -</p> <p>다.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별표 1]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구 분</th> <th style="width: 80%;">기 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나. 전시시설의 구조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한정한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r> </tbody> </table>	구 분	기 준	나. 전시시설의 구조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한정한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구 분	기 준												
나. 전시시설의 구조	· 전시시설 외부에서 차량이 보이지 않도록 시설을 갖추되, 주거 및 도시미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벽을 전시용 유리창(Show Window)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출구 및 입구	· 전시시설이 12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구 분	기 준												
나. 전시시설의 구조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한정한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주) 3. 나목의 전시시설의 구조는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신설>

[별표 2]

자동차정비업의 등록 기준(5조관련)

구분	자동차종 합정비업	소형자동차 정비업	자동차 전문정비업	원동기 전문정비업
		이하	생략	

주) 9. 부분정비업자는 가스연료 사용 자동차의 용기와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부착이나 정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행한 후 정비해야 한다.

주) 3. 나목의 등록기준은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전시시설이 위치한 토지의 용도지역 및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 5. 마목의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된 기준을 적용 한다.

[별표 2]

자동차정비업의 등록 기준(5조관련)

구분	자동차종 합정비업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	자동차 전문정비업	원동기 전문정비업
		이하	생략	

주) 9. 자동차전문정비업자는-----

-----.